

친환경축산 시책방향

서 재 호

농림부 축산경영과

친환경축산 시책방향

'05. 10. 28

농 립 부
축산경영과 서재호

목 차

1. 축산업의 여건
2. 친환경축산정책 추진현황
3. 유기축산 정책방향
4. 깨끗한 목장 가꾸기

<참고자료> 악취방지법, 해양배출

1. 축산업의 여건

가. 한국축산업의 위치

- '04년 농림업 생산액 37.3조원 중 축산업 생산액이 10.8조원(29%)
 - 축산업생산액은 '95년(5.9조원)에 비해 55%증가
 - 양돈, 오리, 사슴 등 기타가축 신장세 증가 추세
- 축산물 소비량 지속 증가
 - 육류 : ('90)19.9kg/1인당→('97)29.3→('04)31.3
- 축산농가는 상대적으로 젊은 경영주가 많고 전업화가 뚜렷
 - 40대 이하 경영주 비율 : 축산 28.8%(전체 9.7%)

농림부

3

나. 축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

- 국내 축산은 수입사료 의존도가 높으나 가축 사육의 규모화·집단화를 통해 효율화 추구
- 가축분뇨처리 미흡, 질병발생 등으로 축산업을 환경오염 산업 인식
- 약취방지 등 환경규제 강화, 유기축산물 공급, 동물복지 등 축산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가될 전망

농림부

4

2. 친환경축산정책 추진현황

가. 환경영향을 고려한 축산기반 구축

□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도입

○ 양분총량제 시행을 위한 준비('05~'06년)

- 축산환경 모니터링 팀 구성, 운영(농진청)
- 시·군별 양분(화학비료, 가축분뇨) 수급분석

○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시행('07년)

- 양분공급 평가, 차년도 양분총량 감축 목표제시
- 2년단위로 재평가 실시 및 감축목표 제시

농림부

5

○ 양분과다 지역중 양분 추가 증가지역

- 정책자금 지원중단, 특별관리지역 지정·관리

□ 생활환경보전, 상수원수질보전 및 특별관리 지역에 대하여는 가축사육 제한 계획

○ 가칭 “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” 제정

- 가축분뇨 발생저감 및 자원화 향상 근거 마련
- 농림부와 환경부 공동입법

농림부

6

□ 친환경축산기반 구축을 위한 과밀사육 억제

○ 축산분뇨처리시설 허가·신고요건 개정

- 현행(신고대상) : 소·말·젖소 축사면적 100~900㎡, 돼지 50~1,000㎡, 사슴 500㎡ 이상

- 개정 : 축사면적+사육두수 병행 관리

○ 축산업등록제 시행('07)

- 축사 단위면적당 적정가축사육 기준 설정

○ 축사 및 분뇨처리 표준설계도 개발보급('06)

- 기존 슬러리축사 및 분뇨 표준설계도 폐지

농림부

7

□ 친환경축사설치 시범사업 추진('05~'07)

○ 사업목적 : 자원순환형 축사 재배치 등
친환경축사 모델 개발

○ 사업대상(6개소) : 종돈, 종계, 낙농, 양돈

○ 지원조건

- 축사 : 100% 용자(3%, 5년거치 10년상환)

- 기반시설(진입로, 전기, 용수) : 80%보조

농림부

8

- 분뇨분리 가능 축사 및 처리시설 구조개선
 - 현 행 : 가축분뇨 혼합(슬러리)처리 대부분
 - 문제점 : 퇴·액비화, 정화방류 등 처리에 어려움 발생
 - 대 책 : 가축분뇨 관리가 용이한 분뇨분리 형태로 전환 유도
 - 분뇨분리시설(고액분리기) 우선 지원 및 점진적으로 미분리시설 지원 제한

농림부

9

나. 축산업 등록제 도입

- 도입목적
 - 가축방역, 친환경 축산, 이력추적시스템 등 효율적 추진 및 선진 축산의 도약
- 주요내용
 - 등록대상 : 종축업, 부화업, 계란집하업, 가축사육업(소·닭·오리 300㎡, 돼지 50㎡ 초과 농가)
 - 등록내용
 - 농가주소, 사육시설종류 및 면적, 사육두수 등

농림부

10

○ 등록기간

- '05.12.26(가축사육업), '04.6.26(계란집하업)

○ 가축사육업의 경우 현재상태 등록

- 소독시설, 가축분뇨처리시설, 축사허가여부 제외

○ 적정가축사육밀도 유도('07.1.1 시행)

⇒ 축산업등록제는 농가 고유번호를 부여하여
사양·방역 및 안전관리 등 농가정보를
체계적·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함

* '05.7.하순 현재 등록율 : 95%(37/39천호)

농림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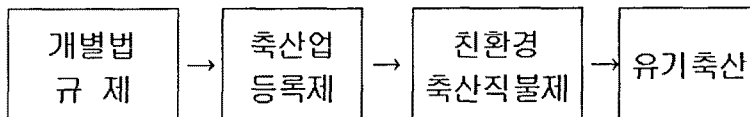
11

다.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 추진

□ 도입목적

- 친환경 축산으로 환경보전, 축산물 안정성 확보, 소득유지 등 지속 가능 축산기반 구축

□ 친환경 축산을 위한 정책수단 단계



농림부

12

□ 지급대상

- 축산업 등록, 축산직불제 프로그램 이행 농가

□ 지급단가(호당)

- 기본프로그램 이행 : 1,300만원 한도내 지급
- 인센티브(조경수 식재) : 200만원 한도

농림부

13

□ 축종별 지급조건

- 소 : 일정면적 이상 조사료포 확보, 발생분뇨의 60% 이상을 사료포에 환원
- 돼지, 닭 : 사육밀도를 축산업등록제 기준보다 20~30% 완화, 발생분뇨를 퇴·액비화하여 적법하게 전량처리
- 공통요건
 - 교육이수, 친환경축산 이행기록 장부 기장
 - 출하전 일정기간 항생제 사용금지

농림부

14

3. 유기축산 정책방향

가. 국내 유기축산 동향

유기축산의 개념

- 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수정란이식이나 유전자 조작을 거치지 않은 가축에 화학비료, 성장 호르몬, 동물약품 등 인위적 합성 첨가물을 첨가하지 않은 사료를 급여하고 운동장이나 휴식공간, 방목초지가 확보된 환경에서 자연적 방법으로 분뇨처리와 환경이 제어된 조건에서 사육되고 가공, 유통, 평가, 표시된 가축의 사육 체계와 그 축산물을 의미

농림부

15

유기축산물인증기준 제정('01.7.31)

: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

국내 유기축산 인증현황

- 인증 품목(7개) : 돈육 1, 계란 4, 계육 2

국내 유기축산 부진사유

- 사 유 : 국내 유기사료 생산유통 기반 취약

농림부

16

나. 유기축산 추진계획

< 추진방향 >

- ◇ 유기축산 육성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
- ◇ 유기사료의 생산 및 공급기반 조성
- ◇ 품질인증 축산농가 유기축산 전환 유도
- ◇ 친환경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제도 도입
- 유기축산 시범사업 추진('03~'05)
 - 국내여건에 적합한 사양관리 기준 마련
 - 한우, 젓소, 돼지, 육계, 산란계 사육
 - 소비자 선호도 및 적정가격 등 경제성 분석

농림부

17

- 유기사료 생산 및 공급기반 조성
 - 자급유기사료 확보 방안 연구
 - 초식가축 : 목초지 또는 사료포 확보
 - 유기농산부산물 공급방안 강구
 - 유기사료 성분등록 및 표시관리 도입방안 검토
 - 사료관리법에 의거 성분등록토록 하고 유기사료로 표시하여 판매방안 검토

농림부

18

- 품질인증 축산농가의 유기축산 전환 가능성 검토(한우, 돼지, 닭 등 축산농가 중심)
 - 기존 축산기반(축사, 부대시설, 초지 등)을 최대한 활용한 경제적 유기축산 기반 구축 방안

- 유기축산물가공품에 대한 표시기준 등 법적 근거 마련(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)
 - 축산물의 표시기준(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) 개정

농림부

19

다. 유기축산 시범사업 추진현황

- 사업내용
 - 사업기간 : 2003~2005년(3년간)
 - 사업장소 : 농협중앙회 안성목장

- 추진현황
 - '03.10월 : 유기조사료포 조성(11ha, 호맥 파종)
 - '03.12월 : 축사 개보수 및 신축
 - '04.02월 : 자가 유기사료 제조시설 설치
 - 유기축산물 인증 : 계란('05.5), 육계('05.7), 돼지('05.7)
 - '04.10월 : 한우 40두, 젖소 25두 유기인증 신청예정

- 향후계획 : 축종별 사양관리지침서 제작 및 보급

농림부

20

4. 깨끗한 목장가꾸기 운동

가. 추진배경 및 기본방향

□ 추진배경

- 환경과 안전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관심증대
- 젓소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원유 위생수준 향상 및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 노력 강화 필요

□ 기본방향

- (사)한국낙농육우협회가 주관이 되어 낙농가 자율운동으로 추진

농림부

21

- 깨끗한 목장 기준을 설정하여 모범목장을 선발 지원하며, 이를 전체 목장으로 확산
- “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”을 낙농체험 관광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소비자 인식 제고

나. 세부 추진계획

□ 목장 환경개선 교육 및 캠페인 전개

- “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본부” 구성 운영(중앙, 도)

농림부

22

- 목장 관리지침 및 환경개선 표준 매뉴얼 제작 보급
- “낙농환경 보호의 날” 지정(매월 셋째주 수요일)
- 지역별 순회교육 등 개최로 자율적 참여 조성

- 모범목장을 선정하여 운동효과 파급 확산
 - 우수목장 및 낙우회를 선정하여 장관 표창 등 실시
 - 우수목장은 낙농체험 대상목장으로 우선 선정

농림부

23

다. 향후 추진계획

- 목장 관리지침 및 표준매뉴얼 연구용역 완료 (10월)
- 지역별 순회교육 등을 통한 홍보강화 (11~12월)
-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(12월)

농림부

24

<참고자료>

악취방지법

가. 악취방지법 재정배경

-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악취를 그 특성에 맞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악취방지법을 별도 제정('04.2.9공포)

⇒ '05.2.10시행(시행령·시행규칙 제정·공포 : '05.2.7)

농림부

25

나. 악취방지법의 주요내용

- “악취관리지역”지정을 통해 악취 취약지역 중점관리
 - 전국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던 방식에서 악취민원 상시 발생지역 등을 “악취관리지역”으로 지정, 중점 관리
 - 악취관리지역에 대하여는 시·도 조례로 엄격한 배출 허용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토록 규정
 - 악취관리지역 내에서는 시·도지사에게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악취방지계획 제출의무화

농림부

26

<악취관리지역의 지정기준>

- ① 악취민원이 3년이상 지속되고 인근지역의 악취가 배출허용기준(기타지역)을 초과하는 경우
 - ② 악취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거나 지역내의 악취가 배출허용기준(기타지역)을 초과하는 공업지역으로서 시·도지사가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국가산업단지, 농공단지, 일반공업지역, 전용공업지역 등

농림부

27

□ 악취관리지역내의 이행사항 및 벌칙

-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의무
-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
 - 1차 : 개선명령
 - 2차 : 사용중지 명령 또는 5천만원 이하 과징금 부과
- 악취방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
 - 악취방지계획에 의한 의무위반 : 100만원이하의 과태료
 - 개선명령 위반자 : 200만원이하의 벌금
 - 사용중지명령 위반자 :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,500만원 이하의 벌금

농림부

28

□ 악취관리지역밖의 사업장은 규제 완화

-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한 조치

- (중전) 조치명령 ⇒ (개선) 1차 개선권고, 2차 조치명령

- 조치명령 미 이행자

- (중전) 200만원이하의 벌금 ⇒ (개선)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※ 대기오염은 건강과 재산에 피해를 주지만 악취는 감각공해로 불쾌감만 유발하기 때문에 중전보다 규제 완화

농림부

29

다. 문제점

□ 악취방지법 제정에 따른 악취관리 강화 예상

- 획일적으로 규제하던 방식에서 악취민원 상시 발생지역에 대한 관리강화로 가축밀집 지역의 민원 발생 최소화 필요

□ 새로운 법 제정으로 농가의 심리적 불안 경향

- 악취관리지역은 주로 시화공단 등 산업단지가 해당되고 악취 관리지역 밖은 오히려 규제가 완화되나 지역주민의 관심은 증가

□ 악취방지 기술개발 미흡 등 근본적인 악취제거 곤란

- 특성상 축사 내외부의 공기순환·정화는 필수적이고 이로 인한 냄새의 노출은 불가피한 반면 연구는 초보단계

해림부

30

라. 향후계획

- 배합사료에 발효촉진제(미생물 재제) 첨가 등을 통한 약취 저감 유도
 - 약취 저감을 위해 발효촉진제 사용을 권장
 - 양돈배합사료에 발효촉진제 첨가 추진 유도
 - ※ 중기적으로 사료공정규격 개정 검토 추진
- 가축분뇨 전(前)처리시설 지원 확대
 - 액비화사업과 연계하는 가축분뇨 전처리시설에 대해서 우선 지원

농림부

31

- 약취 저감을 위한 기술·연구개발 지속 추진
 - 사료, 가축사양, 환경제어, 분뇨처리 등 약취 발생단계 및 요인별 약취저감 연구 추진
- 약취 저감 사례 발굴, 교육·홍보 강화
- 환경과 조화하는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
 - 축산업등록제, 친환경축산직불제 등 정착

농림부

32

<참고자료>

해양배출

□ 양돈분뇨 해양배출 현황

톤당 11~23천원으로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년차적으로 대폭 증가

구분	2000	2001	2002	2003	2004
양돈분뇨 발생량(천 m ³)	12,593	13,368	13,758	14,151	13,656
해양 배출량(천 m ³)	765	1,127	1,626	2,006	2,346

* 해양배출되는 축산분뇨는 대부분 양돈분뇨임. 분뇨발생량4.2kg/두

농림부

33

□ '96(런던협약)의정서 발효에 대비한 대책수립(해수부)

- 해양배출량 단계적 감축(해양수산부 대통령 업무보고 '05.3.9)
- 폐기물 해양배출량을 2011년도 4천 m³까지 배출량을 저감 설정

구분	2003	2004	2005	2007	2011
폐기물 배출량(천 m ³)	8,874	9,749	9,228	7,000	4,000
전년대비 증감(%)	4.7	9.8	△5.3		

해림부

34

□ 해양배출 감소대책에 따른 대책 추진상황

-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시설개보수자금 지원
 - 지원액 : ('91~'03) 9,644억원 → ('04)402 → ('05)333
- 축분 퇴·액비의 수요확대 사업 추진
 - 유기질비료(축분퇴비) 가격차손보전 확대지원
 - 자원화시설 설치비 지원 확대(보조비율 확대 30% → 50%)
- 환경부와 합동으로 “가축분뇨 관리·이용대책” 수립 추진
 - 가축분뇨의 기존 “정화처리” 대상에서 “자원”으로의 인식전환으로 자원화 확대 유도
 - 부처간 가축분뇨 관리정책 연계성 강화, 종합대책 강구

농림부

35

□ 향후 추진계획

- 관련부처(해양수산부) 협의 추진
 -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자금확보 등 준비를 위한 해양배출 감축시기 유예기간(최소 5년) 설정
 - 해양배출량 감축시 가축분뇨의 중전 배출비율 적용 제도화
 - * '04년 현재 전체 해양배출량 대비 가축분뇨는 24%수준
-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시설 개보수자금 지속 지원
-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및 이용활성화 유도
 - “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” 제정
 - 퇴·액비 품질향상을 위한 전처리시설 지원 확대
-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축산을 위해 지역단위 양분 총량제 시행 및 가축사육두수 총량제 도입검토 추진

농림부

36